

『구미시 해외통신사업자인증랩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구미시에서는 해외통신사업자인증랩 구축사업을 위한 스마트 디바이스 클러스터 조성 및 글로벌 통신사업자 시험·인증을 통한 지역 스마트 디바이스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(재)구미전자정보기술원 내 융합기술연구본부를 운영하고 있음.
- 이에 출연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2019회계연도 구미시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하는 (재)구미전자정보기술원 출자·출연 여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동의를 구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출연개요
 - 대상기관 : (재)구미전자정보기술원
 - 출연예정액 : 금2,000,000천원(도비 600,000천원, 시비 1,400,000천원)
 - ※ 5차년도(' 19. 6월 ~ ' 20. 5월) 소요예산 중 지방비 매칭 금액

○ 주요사업

- 사업명 : 해외통신사업자인증랩 구축사업
- 사업기간 : 2015년 6월 ~ 2020년 5월 (5년간)
- 사업위치 : 구미대로 350-27 (금오테크노밸리 모바일융합기술센터)
- 총사업비 : 435억원 [국비(균특)220, 도비30, 시비70, 민자115]

- 연도별 소요예산

(단위 : 억원)

구분	사업비	연차별 투자계획				
		'15년	'16년	'17년	'18년	'19년
계	435	50	130	104	95	56
국비	220	20	65	59	55	21
도비	30	6	6	6	6	6
시비	70	14	14	14	14	14
민자	115	10	45	25	20	15

- 추진주체 : 과학기술정보통신부, 경상북도, 구미시
- 주관기관 : (재)구미전자정보기술원
- 사업내용
 - 글로벌 수준의 체계적 시험인증 환경 조성을 위해 글로벌 통신사업자(Nokia, China Mobile 등) 대상으로 국내 최초 해외통신사업자 인증랩 구축
 - 글로벌 해외통신사업자 인증 획득을 통해 해외에 나가지 않고 해외에서 인증 받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는 국내 인증 대행 서비스 제공

-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

- 2015. 2 : Alcatel-Lucent 인증랩 구축 확정 MOU 체결
- 2015. 8 : China Mobile 인증랩 구축 확정 MOU 체결
- 2016. 5 : Nokia 2G, 3G 인증장비 구축 완료
- 2016. 8 : 해외통신사업자인증랩 개소식
- 2017. 5 : Nokia 및 China Mobile 4G 인증장비(일부) 구축 완료
- 2017. 5 : Nokia 4G 인증권한 획득 및 인증서비스 개시
- 2018. 5 : China Mobile 4G 인터로밍 인증장비 구축 완료
- 2018. 8 : China Mobile 4G 인증권한 획득
- 2018. 10 : China Mobile 4G 인증서비스 개시
- 2019. 5 : Nokia 4G NB-IOT 인증인프라 구축
- 2020. 4 : China Mobile 4G NB-IOT 인증인프라 구축

○ 출연의 필요성

- 글로벌 네트워크 사업자 및 이동통신사 인증랩 구축을 통한 스마트 기기, IoT 단말, 국산 네트워크 장비 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자 전용 인증 지원 체계 마련 필요
- 국내 최초 해외통신사업자 인증랩 구축, 시험·인증서비스를 제공하여 개발기간 단축 및 인증비용을 절감함으로써 국내기업의 해외통신사업자 전용단말 시장진출 기회 제공 및 시장경쟁력 강화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재정법」, 「국가균형발전특별법」, 「정보통신산업진흥법」
「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」
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
「구미전자정보기술원 관리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」
- 예산조치 : 2019년도 예산편성
-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5. 검토의견

- 본 「구미시 해외통신사업자인증랩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」은
 - 해외 통신망사업자 인증을 국내에서 획득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, 시험·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,
 - 사업완료시 인증 획득비용 절감, 인증기간 단축으로 조기 제품출시를 통한 시장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 인증 획득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내 기술 정보 유출 방지를 통하여 국가적 손실을 해소하기 위해 제출된 동의안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됨.